

#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改正試案

柳元迪\*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법령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면서 「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고문화』 40·41 합집, 1992. 12)를 발표한 데 이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고문화』 44집, 1995. 1)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시안을 준비한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 교육부, 총무처, 법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관리국, 한국 박물관 협회, 한국 대학박물관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각 기관의 이기주의가 극심하여 동법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이에 이미 발표한 시안을 현행법규와 비교한 개정시안으로 다듬어, 관계 제 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6년 4월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의 문공위원회에도 전면개정의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95년도부터 정부예산안에 각 국립대학별로 「박물관 지원비」의 예산계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현재 문화체육부의 양대 문화시설로 중요시 되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관리업무는 원래 문교부 소관이었으나, 60년대에 공보처가 신설되면서 박물관 업무가 분장되어 나갔고, 90년 벽두에 문화부가 개편·신설되면서 도서관 업무도 이관되어 나갔다.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그 수장으로 임명된 학자출신의 이어령 장관은 학문과 교육을 통제의 대상으로 일삼아왔던 문교부의 악역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문화부를 문화진흥의 정책기구로 일신하려 하였다. 과거 문교부에서 제정되었던 「도서관법」과 「박물관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도서관 진흥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한 것도 그러한 의지의 발로였다.

그러나 1991.11.30 에 전면개정되어 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박물관의 핵심을 이루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핵심인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마저 완전 배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을

\* 목포대학교 박물관장

\*\* 이 글은 한국 대학박물관 협회로부터 1996년도 정책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이에 사의를 표한다.

미술관을 망라하여 민족문화를 크게 진흥하겠다는 입법취지가 완전 상실된 일종의 '사립 박물관 규제법'으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법의 전면개정 당시 문화체육 부, 교육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법 개정의 주도권을 놓고 감정갈등 비슷한 분란이 야기되었던 데 기인한 바, 이는 '부처이기주의'의 극치로 관련기관 모두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당시 새로이 개편되어 발족된 문화부에는 박물관과를 설치하면서 중앙부서로서 법 개정을 주도하려 하였으며, 지금까지 박물관의 정책수립과 총괄을 담당하여 왔던 국립중앙박물관 측으로서는 박물관과의 설치가 새로운 상전의 등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로서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학박물관이 포함된다는 것은 곧 대학박물관의 지도·감독권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학박물관을 제외토록 요청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8개월 전인 1991.3.24 에 개정 공포된 「도서관 진흥법」은 도서관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를 거쳐 가장 완벽한 법으로 탄생되었다. 이어 도서관 관계자들은 독서진흥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책을 읽는 국민'의 기풍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운용을 보완하여 1994.3.24 동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재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동법에 대학박물관의 규정이 제외됨으로써 대학박물관의 예산과 연구인력 확충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였던 점을 중시하고, 동법에 대학박물관 조항을 삽입하는 부분개정을 호소하여 왔다. 그러나 동법에 의한 법적 진흥책의 미흡은 대학박물관 뿐만 아니라 여타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당면한 현실문제였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부서에서도 동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는 상태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전면개정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굳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한 법의 테두리에 묶어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첫째, 동법이 만들어진 당시 미술관과 화랑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에 편승하여 급작스럽게 입법되었던 사정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박물관과 미술관의 주무부서가 다른데 따른 행정처리의 난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박물관은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미술관은 문화체육부 예술진흥국 예술진흥과에서, 대학박물관은 교육부 대학교육지원국 대학정책담당관에서, 국립박물관·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하고 있다(1995.1.1 정부조직법의 직제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박물관은 박물관과에서, 미술관은 예술진흥과에서, 대학박물관은 학술정보과에서, 국립박물관은 내무부에서 주관하였음). 이들 4개 부서가 잘 협조한다면 몰라도 그간의 행정관행을 볼 때, 자칫 '부처이기주의'의 침병으로 등장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진흥'한다기보다 오히려 '통제'하는 복마전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묶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입법하였던 당시의 입법취지는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현재와 같이 동일한 법으로 묶어 이들을 국민의 문화시설로 진흥하려면 자칫 '통제'의 행정만행을 불러일으킬 주관부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부장관 하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본 계획의 수립, 진흥책의 수립, 설치 및 운영, 기금의 운용, 예산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고(제44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위상을 높여 이들 기관에서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의 일반행정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박물관 진흥법」과 「미술관 진흥법」으로 입법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으나, 이는 국가 법령체계의 공연한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법 체계가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혹자는 「박물관 진흥법」으로 하되, 미술관을 박물관에 준하여 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많은 미술관이 소장·관리하는 자료가 실은 박물관의 유물과 대차 없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주장은 박물관 위주의 극단적인 편견으로, 현실을 타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필자는 위와 같은 개선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함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전면개정의 방향설정은 많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현실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입법취지와 입법과정이 유사하였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주목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바, 이에 개정시안을 만들면서 동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첫째, 법 조문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총칙,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문고, 도서관협력망, 독서진흥 등의 8개 장에 전문 54개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도 이와 체계를 같이 하여 총칙,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설립과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 심의·자문·협력기구 등 9개의 장으로 편장되어, 필요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규정되어 법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 **둘째,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 법 체계에 수용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현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의 핵심을 이루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핵심인 국립현대미술관은 물론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등도 빠져 있다. 1995.12 현재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23관, 공립은 22관,

사립은 55관, 대학은 81관으로서,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제2장),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제3장),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제4장), 대학박물관(제5장) 등으로 편목을 분장하여 설립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위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문화체육부 직제」의 한 모퉁이에 규정되어 있는 데도, 타 법령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된 조항이 많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관계자들은 「문화체육부 직제」가 대통령령이어서 법령의 설치근거가 없어도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지만, 「직제」와 「설치령」에 의한 위상의 차이를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직제」는 「정부조직법」에 부수된 하위법령으로 중앙부처 본부의 직할 하부조직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직제」에 들어갈 직할 하부조직이 아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소관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질서와 위상이 법령체계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그들이 기껏 직할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직제」에 만족하고 있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서의 위치를 그들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체육부 안에서의 규모나 위상으로 보아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맞게 이 법에 의하여 위상이 규정되고(제12조, 제15조), 이 법에 의한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설치령」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제 기관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제11조).

**넷째, 전문인으로서 학예사(큐레이터)의 양성과 자격제 및 이들을 전문적으로 임용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예사는 국가공무원 별정연구직으로서의 임용직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증 소자자로서의 큐레이터는 결코 아니다. 학예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박물관학 전공자’는 실제 없는 바, ‘박물관학’은 관련학과에서 강좌로 개설한 수많은 교과목 중의 하나이지 결코 학문으로서의 전공영역이 아니다. 현재 학예연구사는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준하여 국사, 국민윤리, 국어, 영어, 문화사 등의 5과목과 선택 2과목의 제한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이들 공무원 신분을 큐레이터라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큐레이터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직종에서 전문직이 되기 위하여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서 소정의 실습교육을 받고, 유·무시험의 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케 하고 있으며, 이들 자격증을 가진 자를 전문직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다. 직종에 따른 자격증의 부여 절차는 소관부처에 따라 별개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증은 대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교직은 1급정교사·2급정교사·준교사로, 사서직은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로, 기술직은 기술사·기사·기사보로, 간호직은 1급간호사·2급간호사·간호사보로 되어 있는 바, 학예사도 이에 준용하여 1급학예사, 2급학예사, 준학예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종래 학예직 공무원은 주로 사학과에서 배출되었으나, 80년대 이후 고고학과, 인류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등 40여개 대학에서 분야별 전공인력이 많이 나오고, 여타 예술계와 자연계학과에서도 학예직에 진출하며, 전문대학에도 박물관과가 개설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은 실제 전문행정직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문화정책, 예술정책, 역사자료, 고고·미술자료, 민속자료, 예술자료, 자연사자료, 산업사자료 등을 담당·취급하는 바, 학예사 자격도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역사민속, 고고미술사, 자연산업사, 문화예술의 4개 분야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서관 사서직은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로 단일화 되어 있으나, 이들 다양한 전공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몇 개 분야의 자격증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예사 자격증은 해당 전문학과에서 관련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사서직에서는 30학점 임) 취득한 자로 지정기관(등록된 대학박물관과 미술관 포함)에서 실무·실습을 거쳐(교생실습, 간호실습, 사서실습과 같이), 국가자격시험을 치뤄 2급학예사를 취득케 하며, 대학졸업시 2급학예사 자격취득이 최고의 영예가 되도록 시험과 임용의 권위를 높인다. 국가자격시험은 3개 정도의 공통필수과목과 계열별로 5개 정도의 계열과목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A+, A0) 이수한 시험과목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격증에는 교사자격증과 같이 계열분야를 기재하여 필요한 직종에 임용토록 한다.

공통필수과목	역사민속분야	고고미술사분야	과학산업사분야	문화예술분야
박물관학	향토사연구법	선사고고학	자연과학개론	문화정책
한국문화사	한국서지학	한국고고학	과학사	예술론
보존과학	한국민속학	한국미술사	산업기술사	공연예술론
	?	?	?	?
	?	?	?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2급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학예사를 주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예직 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2급학예사로서 학예직종 경력 9년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친 자에게는 1급학예사를 준다. 전문대학에서 박물관관계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준학예사 자격증을 주는데, 전문직 경력과 교과에 따라 자격연수(자격연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맡음)를 거쳐 상위 자격증으로 갱신토록 하며, 이의 규정은 사서직을 참조하여 법제화 한다(제7조).

자격제로서의 학예사는 전문직으로의 임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예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학예사는 200여명에 지나지 않으나, 일본에는 7,000여명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점차 문화행정이 체계화 되리라 보면 전문직으로서의 학예직의 수요는 2,000여명에 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중앙 행정부처와 시·도·구·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재를 담당하는 행정 전문직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토록 하여야 한다. 각종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물론, 향만·공향의 문화재 감정 평가사, 그리고 각 행정단위 지역의 문화회관 등에는 전문직으로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토록 한다. 최근 들어 각 시·구·군에 거액을 들여 경쟁적으로 지어 놓은 문예회관은 준공 후 전문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바, 여기에 전문 학예직이 배정되어 이들에 의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지역 문화센타로 자리잡아질 것이다. 전문직으로 학예연구관은 1급학예사에서, 학예연구사는 2급학예사에서, 학예사보는 준학예사에서 임용토록 공무원 임용 규정을 정비한다(제8조).

### **다섯째, 대학박물관이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에는 박물관을 국립대학은 ‘두어야 하는 부속시설로’, 사립대학에는 ‘둘 수 있는’ 기구로 되어 있을 뿐 설치기준과 지원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바, 국·공·사립대학의 대학박물관(사관학교 박물관 포함)을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이에 의하여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교육관계 법령에 만들어지도록 하여 예산과 학예직의 확충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제22조).

교육의 일대전환기를 맞아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법 가운데 대학에 관련된 규정을 「대학교육법」으로 독립시키고 이에 부수된 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재정비한다고 한다. 현재 대학박물관과 관련된 법령은 「교육법 시행령」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대학설치 기준령」 등인데, 이 모두가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도외시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학교 설치령」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은 그간 설치령의 개정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되었던 악몽을 우리는 잊지않고 있다. 교육부도 대학의 예산 및 인력의 자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속시설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지원시설에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정부에서 위임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

1994. 7 현재 전국 국·사립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718,609점으로서 국립중앙 박물관 및 그 산하 지방국립박물관의 307,402점보다 월등 많다.주1) 따라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과 국가 매장문화재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대학박물관이 소기의 설립목적에 다하기 위하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학박물관이 규정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에 정하도록 위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제22조 제②항). 동시에 교육부와 대학당국이 대학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할 선언적 의무조항도 규정한다(제22조 제③항).

대학박물관은 교육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문화 하되(제24조 제①항), 명실상부한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학도서관과 같이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간판만 건 부실한 대학박물관 때문에 대학박물관 전체가 도매금으로 오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대학박물관도 국가 매장문화재를 보관할 만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면 총장과 교육부장관을 통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등록하여 매장문화재를 담당하게 보관토록 한다(제24조 제②항).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을 병립시킴으로 국가적으로 예산만 낭비한다고 대학 외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대학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시설이나 전문직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발굴용역에 참여하거나 보직을 위한 위인설관적 설치로 그만큼 불신을 조장하여 왔다는 세인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대학박물관 협회를 법인으로 하고 여기에 학술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술연구기관으로의 품격과 위치를 견지하도록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제25조 제②항).

**여섯째,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으로서 구체적인 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전면개정에서 진흥책으로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기부하거나 유물을 기증한 뜻있는 인사에게 응분의 사회적·문화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해방이후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무하였던 시절에도 뜻있는 인사들은 가산을 탕진하여 가면서 해외로 반출되었을 뻔한 많은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왔다. 여기에는 대학박물관의 역할도 컸다. 그분들이 연로함에 따라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들이 국·공·사립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로 영구적 기증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행정관서와 사리사욕에 눈 먼 졸부들에 의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작태가 속출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자료의 기증이나 기금의 기부

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명예 현창책을 마련하여, 독지가들이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제10조 제②항). 동시에 기증·기부자의 숭고한 문화정신이 현양될 수 있도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유물의 항구적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제33조 제②항).

2) 미술관과 자연사 및 산업과 관련된 전문박물관이 많이 건립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수한 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는 세금감면과 공과금 지원 및 문화훈장의 포상 등으로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제10조).

3) 국가 매장문화재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매장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맡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차체에 이를 상위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제13조). 국가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매장문화재는 거의가 토목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학박물관이 긴급발굴한 유물이다. 이들 매장문화재는 골동품적인 큰 가치는 없으나, 출토지·출토시기·발견자 등이 확실하여 우리나라 선사 또는 고대문화를 규명하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4) 덧붙여 국가 매장문화재의 위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구제발굴은 대부분 대학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수습된 유물은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게서 보관·관리를 위탁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매장문화재를 완벽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매장문화재는 발굴과 함께 곧 항구적인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도, 위탁된 국가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비와 보관비용 등이 「매장문화재 위탁관리 협약」이라는 불평등 협약에 의하여 모두 대학박물관에 떠맡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매장문화재를 위탁보관하는 기관은 대학박물관이라 할지라도 매장문화재를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등록된 박물관에만 위탁하며(제24조 제②항), 위탁보관에 따른 보존처리비와 보관비용 등도 정부예산에 계상토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제13조 제③항). 정부예산에의 계상이 어려우면 유물의 보존처리와 보관을 위하여 발굴용역비의 10%를 유물비로 계상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5) 국가 매장문화재의 관리와 위탁보관에 관련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학술사업은 대학박물관이라 할 지라도 등록된 박물관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조사·발굴의 학술용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설립·운영주체가 다양한 박물관이 많이 생겨나고 대학박물관의 난립된 형세를 방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정부 출연 및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지원, 시

설 및 자료의 확충, 학예직원의 자질향상, 매장문화재의 관리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제9조). 물론 이 기금의 설립은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거쳐야 하는 난관이 있지만, 관계 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타 문화시설(도서관, 문화원, 향토사학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설립목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 이의 규정도 삽입하도록 한다(제47조).

이상과 같이 지적인 바를 유념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전면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의 상충과 용어의 사용에서 어색한 점이 많으리라 본다. 이 시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박물관 종사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한 토의를 거치면(가능하다면 공청회도 수차례 가지면서) 보다 완벽한 법이 성안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어디까지나 '시안'이기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길 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총 칙</b></p> <p>제1조 (목적)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2.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으로서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li> <li>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li> </ol>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2.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으로서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li> <li>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li> </ol>

<p>집·보존·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p>	<p>집·보존·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ol> <p>② 박물관은 박물관자료의 취급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박물관 : 서로 다른 2개 분야 이상의 박물관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li> <li>2. 전문박물관 : 역사·과학·산업·민속 및 향토사료 등 특정분야의 박물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li> </ol> <p>③ 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①항 각호를 준용한다.</p>	<p>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4. 대학박물관 :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ol> <p>② 박물관은 박물관자료의 취급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박물관 : 서로 다른 2개 분야 이상의 박물관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li> <li>2. 전문박물관 : 역사·과학·산업·민속 및 향토사료 등 특정분야의 박물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li> </ol> <p>③ 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①항 각호를 준용한다.</p>
<p>제5조 (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li> </ol>	<p>제5조 (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li> </ol>

<p>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p> <p>3.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p> <p>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 등의 개최</p> <p>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p> <p>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과 정보 및 학예인력의 연수·교환 등 유기적인 협력</p> <p>7.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미술관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중 “박물관자료”는 이를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7호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p>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p> <p>3.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p> <p>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답사 등의 개최</p> <p>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p> <p>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과 정보의 교환 및 학예인력의 연수·자질향상 등 유기적인 협력</p> <p>7.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미술관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중 “박물관자료”는 이를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7호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p>제5조 (이용제공) 박물관 및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up>주2)</sup></p>
	<p>제6조 (직원과 자료 및 시설)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보존·정리·연구·전시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학예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별 학예직</p>

	<p>원과 자료 및 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학예사) ①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정리·전시·연구·평가·관리하는 학예직으로 학예사(큐레이터)를 둔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는 1급 학예사, 2급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up>주3)</sup></p> <p>③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예사의 연수와 자질향상 및 학예직으로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 (학예직의 임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장은 학예직으로 보한다.<sup>주4)</sup></p> <p>②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학예연구실을 두며, 연구원은 학예직으로 보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전문직원은 학예직으로 보한다.<sup>주5)</sup></p>
	<p>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기금)<sup>주6)</sup></p> <p>① 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지원, 시설 및 자료의 확충, 학예직원의 자질향상, 연구 기타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p>

	<p>관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금</li> <li>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li> <li>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li> <li>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li> </ol>
<p>제25조 (재산의 기부)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설치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p>	<p>제10조 (금전·재산의 기부) ①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설치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기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의 명예현창과 사회적·문화적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국 립 박 물 관                   및   국 립 미 술 관</b></p> <p>제11조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① 중앙행정부서장의 소속하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을 둘 수 있다.</p>
	<p>②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sup>주7)</sup></p>

	<p>제12조 (국립중앙박물관)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둔다</p> <p>②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 제①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그 정책의 수립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li> <li>2. 국가 매장문화재의 관리</li> <li>3. 박물관자료의 전산화 총괄</li> <li>4. 학예직의 각종 연수</li> <li>5. 박물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li> <li>6. 다른 박물관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li> <li>7. 박물관 협력망의 조직과 구성</li> <li>8. 기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li> </ol> <p>③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분관(국립지방박물관)을 둘 수 있다.</p>
	<p>제13조 (매장문화재의 관리)<sup>주8)</sup> 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매장문화재를 관리한다.</p> <p>②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국가매장문화재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제②항에 의하여 위탁관리되는 국가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④ 국가매장문화재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박물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 ①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p> <p>② 동물·식물·광물·기술 등의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둔다.</p>
	<p>제15조 (국립현대미술관) ①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p> <p>②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의 ②항 사업 외에 제11조 제①항의 각 호의 업무 및 그 정책의 수립을 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공 립 박 물 관                   및   공 립 미 술 관</b></p> <p>제16조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보존·전시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제17조 (운영)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은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도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8조 (법규)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p>

	<p>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람료와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b></p> <p>제19조 (설립)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제20조 (운영) 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이 법의 목적과 공익정신으로 설립하고 운영되어야 한다.</p>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에 따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1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제4조(적용범위) ②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제20조 제②항·제③항,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대 학 박 물 관</b><sup>주9)</sup></p> <p>제22조 (설립) ①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sup>주10)</sup>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에 정한다.<sup>주11)</sup></p> <p>③ 대학박물관은 박물관자료 및 국가매</p>

	<p>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sup>주12)</sup></p>
	<p>제23조 (업무) 대학박물관은 제4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그 이용</li> <li>2.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li> <li>3. 박물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li> <li>4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li> </ol>
	<p>제24조 (지도·감독) ① 대학박물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에 의해 당해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sup>주13)</sup></p> <p>② 대학박물관은 매장문화재의 위탁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을 통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sup>주14)</sup></p>
	<p>제25조 (대학박물관협회) ① 대학박물관 운영자는 대학박물관의 정보·자료의 교환 및 사무협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구, 종사자의 자질향상,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업무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박물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대학박물관협회는 학술심의위원회를 두어 대학박물관의 조사·발굴 등의 학술활동과 학술연구에 관련된 간행물을 평가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p>

	<p>③ 대학박물관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6조 (등록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직원과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li> <li>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li> <li>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li> <li>4. 시설명세서</li> <li>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li> <li>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원·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 전문직원의 자격요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장 설 립 과 등 록</b></p> <p>제26조 (설립등록)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직원과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학박물관은 교육부장관을 통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li> <li>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li> <li>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li> <li>4. 시설명세서</li> <li>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li> <li>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직원과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7조 (등록증)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박물관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7조 (등록증)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박물관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9조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0조 각 호 해당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②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p>	<p>제28조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9조 각 호 해당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②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p>

<p>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문화체육부장관이 제①항·제②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문화체육부장관이 제①항·제②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li> <li>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li> <li>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li> <li>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li> </ol>	<p>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li> <li>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li> <li>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li> <li>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li> </ol>

<p>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p> <p>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p>	<p>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p> <p>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p>
<p>제11조 (개관과 휴관) ①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 한다)은 연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특수성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2월 이상 계속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장 관 리 운 영</b></p> <p>제30조 (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수이상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특수성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2월 이상 계속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 (폐관신고) ①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제31조 (폐관)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제13조 (장부의 비치)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32조 (장부의 비치)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33조 (자료의 관리) ①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소정의 서식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한다.</p> <p>② 기부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는 기부자의 명예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할 수 있다.</p>
<p>제21조 (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34조 (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대하여 보존처리·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5조 (부대시설의 운영)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설립목적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부대시설의 허용범위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p>

<p>제20조 (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p> <p>③ 모든 수송기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수송할 경우에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36조 (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p> <p>③ 모든 수송기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수송할 경우에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9조(동법 제5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의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사립인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람료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p>	<p>제37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9조(동법 제5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의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사립인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람료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p>

<p>대가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대가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9조 (지도·조언) ① 문화체육부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부장은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지도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장    지 도 감 독</b></p> <p>제38조 (지도·조언) ① 문화체육부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부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지도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 (시정 및 정관명령) ① 문화체육부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나 설립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부장은 제①항(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한다) 및 제12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39조 (시정 및 정관명령) ① 문화체육부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나 설립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부장은 제20조 제②항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①항(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한다) 및 제37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15조 (등록 및 취소) ① 문화체육부장은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p>	<p>제40조 (등록취소) ① 문화체육부장은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p>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취소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4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한 때
  5. 제14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명령을 받고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정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하는 때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취소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6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한 때
  5. 제3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명령을 받고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정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하는 때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p>제16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4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명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1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8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명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sup>주15)</sup>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박물관·미술관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27조 (과태료) 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p>	<p>제43조 (명칭의 사용금지와 과태료)</p> <p>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박물관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p>

<p>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⑥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b>제 9 장 심의·자문·협력 기구</b></p> <p>제4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p> <p>①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효율적인 발전과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up>주16)</s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li> <li>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li> <li>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li> <li>4.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운영 및 시설의 확충</li> <li>5. 학예사의 자격 심사와 양성 및 연수계획의 수립</li> <li>6.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계획</li> </ol>

	<p>7. 기금의 관리·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8. 기타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p> <p>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자문)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li> <li>2.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관한 사항</li> <li>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①항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미술관·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가 특수한 분야에 해당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45조 (자문)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관한 사항</li> <li>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③ 제①항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미술관 또는 박물관자료·미술관 자료가 특수한 분야에 해당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22조 (박물관·미술관협력망) ① 정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li> <li>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li> <li>3. 종합목록·상호대여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효율화</li> <li>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li> </ol> <p>③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 (박물관·미술관협력망) ① 정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li> <li>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li> <li>3. 종합목록·상호대여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효율화</li> <li>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li> </ol> <p>③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7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 (협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사무협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박물관·미술관협회를 설립</p>	<p>제48조 (협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사무협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박물관·미술관협회를 설립</p>

<p>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sup>주17)</sup></p> <p>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7조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박물관법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 . . .</p> <p>제4조 (박물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박물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미술관협회로 본다.</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 .</p> <p>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박물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박물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의 시행은 대통령령에 정한다.</p> <p>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410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 (학예직임용 단서) 제8조의 임용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p> <p>제4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적용된 제 행정조치는 이 법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p> <p>② . . . . .</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② . . . . .</p> <p>③ . . . . .</p>

## 註

주1) 1994. 7. 당시 대학박물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교육부 학술정보과에서 경제기획원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국립대학 박물관 현황 및 예산확보 계획」이라는 자료에는 국립대 박물관 147,286점, 사립대 박물관 423,883점 등 전국 대학박물관의 소장유물 총수를 718,609점으로 통계하고 있다. 경희대의 정진봉씨는 1995. 5. 현재 65개 국·사립 대학박물관의 소장유물을 529,784점으로 파악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국립박물관 유물총수 307,402점과 대비하고 있다(정진봉,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전망」,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제1회 학예연구원 학술발표회 발표요지』, (1995.5.2. 경상대 박물관) p.8 참조).

주2) 박물관대학, 박물관강좌 등이 그 예이다.

주3) 학예사의 자격요건과 양성에 대하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서직에 대한 규정이 크게 참조할 만 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 격
1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li> <li>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li> </ol>
2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li> <li>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ol>
준 사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li> <li>2.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li> </ol>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①항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서 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는 다음과 같다.

자 격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정서개발론 자료조직론(2)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2) 도서관자동화론 저작권론(2)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 사 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1)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1) 저작권론(1)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	---	----------------------------------

- 주4) 국·공립 도서관장은 1991.3.8 「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5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1997.1.1 부터는 사서직으로만 임용토록 규정되었다. 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24조 제①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로 하였고, 동법 부칙 제4조에 현행 사서직 또는 행정직의 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법 부칙 제4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란 1996년 12월 31일’임을 명문화 하였다.
- 주5) 이를 위하여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제 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 주6)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참조하여 「기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 주7) 국립의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를 「문화체육부 직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한 설치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부 직제」의 ‘제5장 국립중앙박물관’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과, 산림청의 ‘산림박물관’, 앞으로 설치될 ‘국립자연사박물관’ 등을 이 법에 의한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설치령」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 주8) 국가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불 때 이를 상위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 주9)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장 대학도서관’ 참조
- 주10) 「사관학교 설치법」 및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육·해·공군사관학교의 박물관을 포함하기 위해서다.
- 주11) 「국립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대학도서관에 준하여 대학박물관의 조직 및 사무분장 등을 명기하고, 「대학설치 기준령」에 대학박물관의 설치기준을 명시한다.
- 주12)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유물(주1) 참조)은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로서 그 수량이나 학술적 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 때, 이 법에 의하여 대학박물관

관이 중점적으로 지원·육성될 수 있도록 선언적 규정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주1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3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참조.

주14) 국가매장문화재를 보관하는 대학박물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장문화재는 긴급 구제발굴을 통하여 수습된 것으로 즉시 보존처리에 착수되어야 할 유물이나 예산, 기술, 인력 등이 미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완벽한 보존처리와 충분한 보관시설이 없이 위탁보관된 국가 매장문화재는 모두 문화체육부에 환수되어 적절한 시설을 갖춘 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주15)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대폭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주1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참조.

주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 제③항 참조.

## [ 附 記 ]

### 대학박물관을 육성하기 위한 법령개편의 방향

대학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빠져있는 대학박물관에 대한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주관부서가 문화체육부이고, 동 법은 전면개편이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으면서도 전면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이 당면하고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는 단기적인 대책이나마 우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2개 조문을 개정한다. 그리고 나서 대학과 관련된 교육관계의 대통령령을 개편하여 박물관의 지원·육성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한다.

I.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3조제①항과 제4조제②항의 2개 조문에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반영되도록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금년중에 개정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①항 : 박물관의 종류에 대학박물관을 추가한다.

나. 제4조제②항 :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학박물관 조항을 삽입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를 규정한다.

- \* 대학박물관 및 사관학교의 대학박물관 설치근거를 분명히 한다.
- \* 대학박물관을 적극 지원·육성하도록 선언적인 조항을 삽입한다.
- \* 대학박물관의 설치·운영의 규정은 교육관계법에 정하도록 위임입법한다.
- \* 대학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부에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시안

현행	개정
<p>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나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ol>	<p>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나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4. 대학박물관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대학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ol>
<p>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박물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제20조제②항·제③항,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박물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의 2(대학박물관) ①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대학은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대학박물관은 박물관자료 및 국가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p> <p>③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에 정한다.</p> <p>④ 대학박물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에 의해 당해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위임입법에 근거하여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하여 국립대 박물관이나마 예산 및 학예연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해년마다 동 설치령을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의 사서직 위상을 높여 왔던 바, 대학박물관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3조(도서관)에 제13조의 2(박물관)을 신설하여 학예연구실을 법정화하고 학예연구실장을 국립박물관과 같이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한다(말미의 「국립박물관의 학예직 현황」 참조).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7조(도서관의 조직)에 17조의 2(박물관의 조직)을 신설하여 같은 내용을 삽입토록 한다. 다만, 사립대학에 대한 대학박물관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도록 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시안

현행	개정
<p>제13조(도서관) ① 도서관(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의 도서관을 제외한다)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92.3.6, 93.2.24, 94.2.28, 95.2.28)</p> <p>② 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p> <p>③ 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p> <p>④ 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p>	<p>제13조(도서관) ① 도서관(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의 도서관을 제외한다)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92.3.6, 93.2.24, 94.2.28, 95.2.28)</p> <p>② 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p> <p>③ 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p> <p>④ 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p> <p>제13조의 2(박물관) ① 박물관에 서무과와 학예연구실을 두며,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p> <p>②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안</li> <li>2. 관인관수</li> <li>3. 문서처리</li> <li>4. 회계</li> <li>5. 박물관자료의 구입 및 등록</li> </ol> <p>③ 학예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li> <li>2. 박물관자료의 전시</li> <li>3. 박물관자료의 학술연구</li> <li>4.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조치</li> <li>5. 학술조사 및 발굴조사</li> <li>6. 학술보고서의 간행</li> <li>7. 박물관 이용자의 지도</li> </ol>
--	--

Ⅲ. 대학의 부속시설로서 최근 대학도서관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대학설치 기준령」에 시설공간, 장서수, 열람석수, 정기간행물수, 사서직원수 등 도서관으로서의 설치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였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에 대하여는 전시실, 보관실, 사무실 등으로만 형식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박물관의 육성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제에 박물관자료(유물)수를 관계학과와 연계하여 규정하고, 전시실, 정리실, 수장고의 공간크기와 시설을 제시하여 독립건물을 확보하도록 하며, 보존처리실, 시청각실, 학예연구실 및 사무실 등도 규정토록 한다.

### 「대학설치 기준령」 개정시안

현	행	개	정
제12조(도서관 등) ① 대학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개정 88.7.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 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등 필요</li> </ol>	제12조(도서관 등) ① 대학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개정 88.7.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 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등 필요</li> </ol>

한 시설

2. 열람실에는 총 학생정원의 20 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3.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
  4.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 간행물
- ② 대학에 박물관을 둘 수 있으며,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88.7.27)
1. 자료전시실
  2. 자료보관실
  3. 사무실

한 시설

2. 열람실에는 총 학생정원의 20 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3.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
  4.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 간행물
- ② 대학에 박물관을 둘 수 있으며,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88.7.27, )
1. 박물관자료 : 관련학과(한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인류학)당 100점 이상
  2. 자료전시실 : 총학생정원 1만명 이하는 330평방미터 이상, 2천명당 100평방미터를 추가한 면적 이상
  3. 자료정리실 : 전시실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면적
  4. 자료수장고 : 전시실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면적에 방습시설과 할로젠가스 방화시설 및 적외선·무인카메라 방법시설
  5. 보존처리실
  6. 학예연구실
  7. 참고자료실
  8. 시청각실
  9. 관장실
  10. 사무실

## 국립 박물관의 학예직 현황

(1996. 5. 31 현재)

박물관별	유물총수	직원총수	학예연구직		장의직급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관장	학예연구실장
중앙박물관	121,683	106	16	24	1급 상당	학예연구관
경주박물관	16,555	12	4	4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광주박물관	35,059	9	4	3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전주박물관	1,788	8	4	3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부여박물관	7,055	9	2	4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청주박물관	4,053	7	2	2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진주박물관	1,629	7	2	3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공주박물관	8,032	5	1	2	학예연구관	학예실 없음
대구박물관		7	2	2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
제주박물관	현재 시설공사 중					
춘천박물관	현재 시설공사 중					
부산박물관	계획 중					
계	195,854	170	38	48		

- \* 직원총수는 행정직과 학예직을 합한 것
- \* 1996. 5. 31 현재 문화체육부 소관의 제 기관(9개 국립박물관, 문화재 연구소, 국립민속 박물관, 왕궁박물관 등)의 학예직 총수는 학예연구관 44명(상당 별정직 제외), 학예연구사 78명임.
- \* 참고 : 교육부 소관에는 학예연구관 전무, 학예연구사 32명임.